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장 규정

제정 1991. 7. 1.

개정 2011. 3. 1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장(이하 “식품공장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식품공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식품공학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
2. 식품공학 연구 지원
3. 식품 사업화 연구개발 및 제품의 보급
4. 기타 학장이 지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공장장은 농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
② 식품공장에는 연구개발부, 제품지원부 등의 관련 부서를 둘 수 있다.

③ 공장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식품공장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품공장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원 중에서 식품공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2. 규정의 개정 및 폐기
3. 기타 식품공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부칙(1991.7.1.)

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92호, 2011.3.11.)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